

『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2월 28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3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3월 10일

제2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설 동 주

나. 제안이유

○ 상위 법령인 「임대주택법」이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」의 폐지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임대주택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건 호

- 본 「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」은
 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,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조정위원회의 구성, 운영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「임대주택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규정으로 제정된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